

투자위험등급:  
1 등급  
[매우높은위험]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 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아시아 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슈로더 아시아 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슈로더 아시아 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3. 판 매 회 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schroders.co.kr)  
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2013년 2월 22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3년 2월 28일
6. 모집(매출)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 조좌
7. 모집(매출)기간(판매기간):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가능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금융위원회(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금융위원회(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www.kofia.or.kr
- 서면문서: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본점 및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chroders

# 목 차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 용어 정리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 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동 증권(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및 예비 포함)는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	금융투자 협회 펀드코드
슈로더 아시아안 에셋 인컴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AC452
A	AC453
A-e	AC454
C	AC455
C-e	AC456
F	AC457
I	AC458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주식혼합-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종류형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모집예정금액: 10조좌

이 투자신탁은 추가 모집이 가능한 개방형(추가형)투자신탁으로 모집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모집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습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별도의 모집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schroders.co.kr)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 또는 배정 절차 및 방법: 특이 사항 없음.

\*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슈로더 아시아 에셋 인컴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AC452)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신규펀드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신탁계약서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중구 태평로 1 가 84 번지 서울파이낸스센터 26 층 (대표전화: 02-3783-0500)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12.6.30현재)

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1)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년생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 기구수	다른 운용자산 규모 (수탁고기준)	
장정주	1978	부장	7	549억원	- 기업은행 자금운용실 - 동양선물 - 슈로더투신(2005.7 ~) - 운용경력 5년 - 서강대 경영학 학사, CFA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년생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 기구수	다른 운용자산 규모 (수탁고기준)	
김영신	1971	이사	12	961억	- 살로먼스미스바니증권 세일즈 트레이딩 - 씨티그룹증권 트레이딩 - 슈로더투신(2005.6 ~) - 운용경력 4년 - 연세대 영문학 석사

[운용전문인력이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없음]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운용본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투자 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동 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1)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직위	주요 경력 및 이력
<b>Richard Coghlan</b>	홍콩 멀티에셋 운용팀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슈로더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한국의 멀티에셋 운용부문 총괄 및 홍콩 멀티에셋 운용팀 총괄</li> <li>• 2006년 7월에 슈로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Hong Kong) 이동, 슈로더 홍콩 멀티에셋 운용팀 총괄 업무 개시</li> <li>• 2004년 10월에 슈로더투자신탁운용 운용본부장으로서 펀드 및 법인 구조개편에 참여</li> <li>• 2003년에 슈로더투자신탁운용으로 이동하여 멀티에셋 포트폴리오를 운용</li> <li>• 2001년에 슈로더 한국사무소의 서울구조조정펀드 운용에 프로젝트 팀장으로 참여</li> <li>• 1997년에 아시아개발은행의 계열사인 아시아 파이낸스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에서 한국, 중국, 인도 투자팀에서 운용업무 시작</li> <li>• 유해오물처리지에서 환경공학 분야의 환경 복구 조사 업무</li> <li>• 미국 시카고대학 재무회계학 MBA. 미국 브라운대학 지구화학 석박사. 미국 듀크대학 지질학 학사</li> </ul>

주1)피투자집합투자기구 신탁재산은 공동운용 방식(팀운용)으로 운용되며, 운용을 총괄하는 상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예고없이 교체될 수 있습니다.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직위	주요 경력 및 이력
<b>Robin Parbrook</b>	아시아 주식팀 공동 펀드매니저 - 아시아(일본제외) 주식팀 총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홍콩 소재 아시아(일본제외) 주식팀 총책 겸 지역/대안투자 펀드매니저</li> <li>• 1990년 런던 애널리스트로 슈로더에 입사</li> <li>• 1992년 홍콩에서 아시아 펀드매니저로 6년간 근무</li> <li>• 1998년 런던에서 스페셜리스트 태평양 포트폴리오를 운용</li> <li>• 2001년 초 싱가포르에서 아시아(일본제외) 지역 담당 부CIO로 근무</li> <li>• 2002년 홍콩에서 아시아(일본제외) 담당 업무에 추가하여 그레이터 차이나 상품의 성과 감독 지원</li> <li>• 2005년 아시아(일본제외) 주식팀 총책으로 선임되어 운용자산 US\$200억 규모(2007년 말 기준)의 투자팀을 감독</li> <li>• 2008년 에딘버러에서 앵솔루트 리턴 추구 아시아 투자전략을 집중 운용</li> <li>• 2010년8월 홍콩에서 아시아 토탈 리턴 및 기타 아시아 주식 전략을 운용</li> <li>• 2011년 7월 아시아(일본제외) 주식팀 총책으로 재선임</li> <li>• Edinburgh University 경제학 석사</li> </ul>
<b>Manish Bhatia</b>	아시아 주식팀 공동 펀드매니저 아시아(일본제외) 주식 포트폴리오 펀드매니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홍콩 소재 아시아(일본제외) 주식팀 펀드매니저</li> <li>• Unit Trust of India에서 펀드매니저 겸 애널리스트로 근무 (1994 -2000)</li> <li>• Hamon Asset Management에서 펀드 매니저로 근무, 기술업종 펀드와 지역 앵솔루트 리턴 포트폴리오를 운용 (2001 -2006. 3.)</li> <li>• Manulife Asset Management에서 아시아 태평양팀 총책(홍콩/중국 제외)으로 2008년 슈로더로 이직, 인도와 대만 펀드를 포함 다수의 아시아 태평양 포트폴리오를 운용 (2006. 3. -2008. 8.)</li> <li>• 인도 Regional Engineering College 공학학사</li> </ul>



주1)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는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등**

이 집합투자기구는 아시아 주식과 아시아 채권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수익과 자본성장 달성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피투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해외주식 및 해외채권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경제상황 및 과세제도 변동, 금리변동 및 환율변동등에 따른 외화자산 투자가치 변동등 위험으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되며,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 내역
1)집합투자증권	100% 이하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2)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3)주식	40% 이하	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주식”이라 한다.)
4)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통화나 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환율위험해지목적의 투자에 한한다. 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통화나 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환율위험해지목적의 투자에 한한다. 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
5)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10% 이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 내역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제 1 호 및 제 2 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6)신탁업자와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내지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li> <li>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li> <li>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li> <li>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li> <li>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1) 내지 4)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li> </ol> *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신탁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3)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나. 투자 제한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이해관계인 과의 거래	-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 제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집합투자 증권 등(1)	-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호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 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9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p>상장지수집합 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호 나목의                  집합투자 증권은 제외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마. 투자자의 보호 및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염려가 없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경우</p>	
<p>집합투자                  증권 등(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li> <li>-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li> <li>-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li> <li>-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li> </ul>	
<p>동일종목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li> <li>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li> <li>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li> </ul>	<p>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p>

	<p>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각목의 할인·매매·증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하 이 목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은행·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p>	
<p>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p>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p>
<p>파생상품 매매</p>	<p>법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p>	<p>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p>
<p>동일 거래상대방</p>	<p>같은 거래상대방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행위</p>	<p>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p>
<p>계열회사 주식투자 한도</p>	<p>법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p>	
<p>후순위채권 투자</p>	<p>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p>	
<p>-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서제18조제3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10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li> <li>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li> <li>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li> </ol>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서제 19 조제 2 호, 제 19 조제 7 호본문, 제 19 조제 9 호 내지 제 10 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최초 설정일 이후 외국집합투자기구인 Schroder Asian Asset Income Fund 에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하며, 일부 투자신탁의 설정 및 환매를 위한 목적이나, 환헤지를 목적으로 현금자산을 일부 보유할 수 있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인 Schroder Asian Asset Income Fund 는 Schroder Umbrella Fund II 의 하위펀드로서 아시아 주식과 아시아 채권등에 주로 투자하여 중장기적인 수익과 자본성장 달성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해외주식 및 해외채권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경제상황 및 과세제도 변동, 금리변동 및 환율변동등에 따른 외화자산 투자가치 변동등 위험으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되며,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상기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과 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결정된 변경사항을 관련 법령과 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서에 명시된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공지할 예정입니다.

**(2)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및 투자전략**

※ 본 항목에 기재된 집합투자업자들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들을 지칭하며, 피투자집합투자기구 관련 상세 내용중 일부 발췌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http://www.schroders.hk/retail/en/fundfactsheetsreports.aspx>)에 게시된 피투자집합투자기구관련 문건을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피투자집합투자기구 개요**

<b>펀드명</b>	<b>Schroder Asian Asset Income Fund</b> - 홍콩에서 설정된 Schroder Umbrella Fund II 의 하위펀드인 Schroder Asian Asset Income Fund
<b>투자목적</b>	아시아 주식과 아시아 채권등에 주로 투자하여 이자 및 배당 수익과 중장기적인 자본이익을 추구
<b>펀드설립일</b>	2011년 6월 27일
<b>펀드규모</b>	HKD8,852백만(한화 약 1조 3,2523 원), 2012년 3월말 기준
<b>펀드매니저</b>	Dr Richard Coghlan(총 14년의 운용경력 보유, 2001년 슈로더 입사)
<b>운용회사</b>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에 의해 설정된 상기 외국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서는 2012년7월10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었습니다.

**B.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주요 투자전략**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투자가치가 있고 지속적인 배당금을 제공하는 아시아 기업의 주식 증권 및

아시아 소재 정부, 정부기관, 국제기구, 기업이 발행한 것으로서 투자가치가 있는 금리수익을 제공하는 (투자시점 혹은 그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투자등급이나 투자등급 미만의 채권, 기타 고정 금리부 및 변동금리부 증권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목적 달성하고자 합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투자등급 미만이거나 혹은 투자등급이 없는 채권과 채무성 증권에 자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아시아 이외 지역에서 발행된 증권,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실물자산(에너지, 금속, 농산물 등 커머더티) 및/또는 이와 유사한 투자기구와 같은 기타 자산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REITs는 반드시 SFC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배당방침이 피투자 REITs의 배당방침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아시아 주식, 아시아 채권, 기타 자산군, 현금성 자산 간 적극적인 자산배분을 통하여 투자목적 달성하고자 합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가치평가, 거시경제 데이터, 유동성과 같은 경제 기초 여건 및 정량적 요소에 복합적으로 기초하여 4단계 경제순환 국면(회복기, 활황기, 후퇴기, 침체기)에 따라 자산배분을 달리하는 경제순환 국면에 따른 자산배분 방식을 활용합니다. 현금성 자산은 개별 자산군으로 취급되며 필요한 경우 불리한 시장상황에서 가격 하락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각 자산군별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예상 자산배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시아 주식: 30 - 70%
- 아시아 채권: 30 - 70%
- 기타 자산군: 0 - 20%
- 현금성 자산: 0 - 30%

적극적인 자산배분 방식에 더하여,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아시아 주식, 아시아 채권 및 기타 자산군에 투자하기 위해 적극적인 종목 선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아시아 주식 포트폴리오의 경우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진정한 주주가치,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흐름, 지속가능하고 높은 배당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회사들에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아시아 채권 포트폴리오의 경우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가치평가, 수급 상황, 유동성과 같은 경제 펀더멘털 및 기술적 견해에 기초하여 투자가치가 있는 이자수익과 자본성장을 제공하는 종목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금리 변화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견해에 기초하여 듀레이션을 관리합니다. 듀레이션은 금리 변화 대비 포트폴리오 가치 민감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듀레이션 관리는 금리 변화가 포트폴리오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 인상은 채권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집합투자업자는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해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을 낮추고자 할 것입니다.

또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위험 회피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으나 집합투자업자가 반드시 그러할 의무는 없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활용하는 위험회피 전략이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위험 노출을 완전히 효과적으로 상쇄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극단적인 시장상황에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현금성 자산을 10% 이상 보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집합투자업자는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순자산가치의 10% 범위 내에서 중국 A 주식, 중국 B 주식 및/또는 이와 연관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중국 A 주식 및 중국 B 주식에 10%를 초과하여 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수익자에게 1개월 전에 통지하고 그에 따라 본 등록신청서를 갱신할 것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현재 중국 A 주식에 직접 투자할 계획은 없으며, 중국 본토 증권 연동 상품(China market access products)과 같은 금융상품을 통해 중국 A 주식에 대해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중국 본토 증권 연동 상품 및/또는 중국 A 주식의 성과와 연계된 파생상품에 대해 동일 발행인에 대한 총위험평가액을 순자산가치의 10% 이하로 제한합니다. 전술한 10% 한도는 SFC의 승인을 얻어 본 등록신청서를 개정할 경우에만 초과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탁회사의 사전 동의 및 SFC의 승인을 얻어 본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을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자에게 1개월 전에 사전 통지합니다

< 전체 투자 프로세스 >



C.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자산 배분 절차

각 자산군별 예상 자산배분 내역은 상기한 바와 같으며, 집합투자업자는 글로벌 자산 배분 위원회의 자산배분 전망, 경제 및 시장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아시아 주식, 채권, 대안 자산, 현금에 대한 투자비율(자산 배분)을 변경(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 배분 결정은 정량, 정성 데이터 분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집합투자업자의 자산배분 결정은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a) 분기별 - 정보 수집 및 분석

멀티에셋팀은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예상 투자수익을 분석합니다. 이러한 리서치는 투자수익에 따르는 기초 위험요소를 나타내는 개별 리스크 프리미엄 수준별로 이루어집니다. 투자수익원을 분석함에 있어 멀티에셋팀 또는 리스크 프리미엄 그룹은 가치평가, 경제사이클, 모멘텀에 기초한 분석 체계를 활용합니다.

(b) 월별 - 선호 자산군 결정

6명의 수석 멀티에셋 투자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자산 배분 위원회는 매월 (혹은 시장 상황에 따라 이보다 더 자주) 개최되는 회의를 통해 경제전략팀의 경제순환주기 모델과 여러 리스크 프리미엄 팀이 제공한 자료를 고려합니다. 멀티에셋투자팀원으로 구성된 아시아 자산 배분 위원회는 글로벌 자산 배분 위원회와 병행하여 매월 회의를 가지며, 이러한 회의를 통해 특히 아시아 자산에 대한 선호 자산군을 결정하고 아시아 대표는 이를 글로벌 자산 배분 위원회에서 발표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주로 정성 분석을 따르며, 글로벌 자산 배분 위원회의 각 구성원은 적극적인 자산 배분 포지션의 일환으로 실행되는 가치평가와 테마별 특이점 (thematic anomalies)을 알아낼 책임을 집니다. 투자 거래는 1명의 제안과 1명의 동의가 있어야 위원회에 부의되며 타당한 근거와 손익 한도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c) 일별 - 포트폴리오 구성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글로벌 자산 배분 위원회의 지침을 가장 잘 대표하는 포지션의 시기와 규모를 결정하며 기대 수익 대비 자산 비중에 따른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D.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제한 및 차입제한



- (a) 동일 발행인이 발행한 증권(국공채 제외) 또는 단기금융상품에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순자산의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 (b) 본 펀드의 다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와 합산하여 동일 발행인이 발행한 주식(국공채 제외)의 10% 이상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 (c) 전세계 일반에게 공개되고 정규 증권 거래가 이루어지는 증권거래소, 장외시장, 기타 정규 증권시장에서 상장되거나, 호가되거나, 거래되지 않는 증권에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순자산가치의 15% 이상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 (d) 위험 회피 이외 목적으로 워런트와 옵션에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순자산가치의 15% 이상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 (e) 공인되지 아니한 관할지(홍콩 단위신탁 및 뮤추얼펀드에 관한 법(the Code on Unit Trusts and Mutual Funds), “**홍콩 펀드법(Code)**”에서 정의됨)에서 발행된 기구로서 SFC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개방형 단위신탁이나 뮤추얼펀드(“**투자펀드**”)의 주식이나 수익권에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순자산가치의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으며, 공인된 관할지(홍콩 펀드법에서 정의됨)에서 발행된 투자펀드 또는 SFC가 승인한 기구가 발행한 주식이나 수익권에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순자산가치의 30% 이상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다만,
  - (i) SFC가 승인한 펀드의 투자 목적상 SFC가 금지한 투자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펀드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 (ii) SFC가 제한한 투자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산을 보유함으로써 관련 투자제한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 (iii) 집합투자업자 또는 이의 관계인이 운용하는 투자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펀드에 부과되는 모든 선취수수료를 포기하여야 합니다.
  - (iv)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투자펀드나 이의 집합투자업자가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 어떠한 리베이트도 받을 수 없습니다.
- (f) 모든 미결제 선물계약에 따라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지급하거나 수령해야 할 계약금액의 순가치 총액(위험 회피 목적으로 체결된 선물계약은 제외함)은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보유 중인 일반상품(금, 은, 백금, 중금을 포함함) 및 일반상품에 기초한 투자자산(일반상품의 생산, 처리 또는 거래에 종사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제외함)의 총가치와 합산하여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순자산가치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g) 동일 발행인이 발행한 국공채에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순자산가치의 30% 이상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 (h) 위 (g)항의 투자제한에 따를 것을 전제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최소 6개 이상의 종목에 투자할 경우 동일 발행인이 발행한 국공채에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를 대리하여 이하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i) 집합투자업자의 이사와 임원이 개별적으로 기발행 증권 해당 종목의 총액면가의 0.5% 이상 또는 공동으로 5% 이상을 소유한 발행인의 어느 증권 종목에 투자하는 일
  - (ii) 여하한 유형의 부동산(건물 포함)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권(옵션이나 권리를 포함하되 부동산회사의 주식이나 부동산투자신탁(REIT)의 지분은 제외함)에 투자하는 일
  - (iii) 공매도하는 일.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순자산가치의 10%를 초과하는 증권 교부 의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한함 (단, 본 조항의 목적상 공매도되는 증권은 공매도가 허용되는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것이라야 함)
  - (iv) 결제보장되지 아니한 옵션(uncovered options)을 발행하는 일
  - (v) 모든 콜옵션의 총 행사가격이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순자산가치의 25%를 초과하는 콜옵션을 발행하는 일
  - (vi) 수탁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자산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일. 다만, 투자자산의 취득이나 자금의 예탁은 대출로 보지 아니함
  - (vii) 수탁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의 채무를 인수, 보증, 배서하거나 달리 직접적으로 혹은 우발적으로 제3자의 채무에 관한 혹은 이와 관련한 책임을 지는 일.
  - (viii)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를 대리하여 무제한 채무의 인수 조건을 포함하는 채무 약정을

체결하거나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이러한 채무를 인수하는 일

- (ix) 대금이 완전 납입되지 아니하여 미납된 대금에 대한 납입청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투자자산의 취득에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총당하는 일. 다만, 상기 (v)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탁회사의 의견상 (불확정 혹은 여타) 채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여타 투자자산의 취득에 수탁회사의 동의 없이 총당될 수 없는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완제될 수 있는 납입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집합투자업자는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순자산가치의 25% 범위 내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제한의 목적상 백투백 론(back-to-back loan)은 차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수탁회사는 자금의 차입 및 차입에 따른 이자와 비용 지급을 위해 집합투자업자의 동의를 얻어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자산의 전부 혹은 일부에 담보권이나 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상기한 투자제한을 위반하게 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합리적인 시일 이내에 수익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최우선적으로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본 조항의 목적상 “국공채”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발행하거나 이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한 증권 또는 OECD 국가의 공공정부, 지방정부 또는 이의 국영 금융산업체(nationalized industry)가 발행하거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또는 수탁회사가 이에 상응하는 신인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여타 기구가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현재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 증권 대여, 환매조건부매매거래 혹은 이와 유사한 장외 거래를 체결할 계획이 없습니다.

주1)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특별한 투자한도 없이 투자등급 미만이거나 혹은 투자등급이 없는 채권과 채무성 증권에 자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내부 방침상 투자등급 미만이거나 혹은 투자등급이 없는 채권에 대한 동일 발행인 익스포저는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순자산의 3%를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추가 투자제한**

대한민국에서의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모집과 관련하여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다음 추가적인 투자제한을 준수합니다.

- (1)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고 총발행금액의 10% 이상은 한국외에서 판매될 것
- (2) 순자산의 90% 이상이 외화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 포함), 외국부동산, 외국상품에 투자 운용될 것
- (3)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위험회피 목적으로만 파생상품을 활용함.
- (4) 장외파생상품은 금융투자상품,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일반상품, 신용위험,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서 매일 신뢰 가능한 가격으로 평가되고 언제나도 공정가치로 청산 또는 해지가 가능하며 거래상대방은 해당 국가의 건전성 규제를 받는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일 것
- (5) 집합투자재산에서 차입을 하지 않을 것. 단, 환매대금 지급 등 부득이한 경우 순자산의 10% 이내에서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것은 예외
- (6) 동일인과의 총 거래금액이 집합투자재산의 3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동일 발행인이 발행한 증권에 순자산가치의 10% 이상(국공채의 경우 30%까지)을 투자하지 아니하며,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장외 파생상품 및/또는 예치금은 합산하여 순자산가치의 10%를 넘지 아니함.
- (7)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순자산가치 이내로 제한될 것
- (8)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평가액(거래상대방의 부도시 발생가능한 최대손실)이 각 집합투자재산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9) 집합투자재산의 20%를 초과하여 동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을 것. 이 경우 투자대상이 되는 집합투자기구는 신탁계약서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10%를 초과하여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지 않을 것
- (10) 집합투자재산의 30%를 초과하여 법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지 않을 것

- (11)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전을 대출(골론 제외)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보증하지 않을 것
- (12) 집합투자재산으로 공매도(대주거래)를 하지 않을 것
- (13) 집합투자업자 및 그 관계회사, 동 회사의 임원, 주요주주(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발행주식수의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그 배우자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등 외국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집합투자재산과의 사이에서 자기를 위하여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14) 투자자의 환매신청후 15일 이내에 환매가 이루어질 것.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국가 현황

	홍콩	호주	중국	대만	싱가폴	인도네시아
GDP (명목,십억달러,2011)	246.9	1,320.1	6,988.5	504.6	266.5	834.0
GDP 성장률 (YoY, %)	5.0	2.1	9.2	4.0	4.8	6.6
민간소비	8.4	3.5	9.4	3.1	5.6	4.8
고정자산투자	7.3	6.2	10.6	(7.9)	2.8	8.8
정부지출	1.8	1.7	9.9	1.1	3.1	3.2
순수출 성장기여도 (%p)	(0.7)	1.7	(0.5)	3.7	0.0	1.6
물가상승 (CPI, YoY)	5.3	3.4	5.4	1.4	5.2	5.4
기준금리(%)	0.5	4.3	6.6	1.9	0.0	6.0
국가신용등급(S&P)	AAA	AAA	AA-	AA-	AAA	BB+
GDP 대비 공공부채	33.8	14.4	26.9	38.5	93.5	25.2
경상수지(bn USD)	13.4	(32.8)	201.1	55.4	52.8	1.5
경상수지(GDP 대비)	5.4	(2.2)	2.8	11.0	19.8	0.2
외환보유고(bn USD)	285.4	36.0	3,181.2	385.5	237.7	110.1
대미환율	7.8	1.0	6.3	30.3	1.3	9,069.0
시가총액 (bn USD)	265.4	817.1	577.4	354.4	157.6	96.7
PER (배)	12.0	11.1	9.4	15.6	12.6	14.7
EPS 성장률 (%)	19.7	7.2	12.4	(20.3)	(2.3)	20.1

주1) 출처: MSCI (시가총액, PER, EPS성장률), UN(GDP), IMF(물가상승률, 경상수지, GDP대비 공공부채, Bloomberg(기준금리, 외환보유고, 대미환율), S&P(국가신용등급), Thomson Reuters, MSCI Barra  
 주2) 기준일: 2011년 12월말

(3) 집합투자기구의 참조지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참조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참조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시장 상황,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참조 지수의 등장 및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참조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참조지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조지수의 변경시에는 해당 내역을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www.schroders.co.kr)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 지수: MSCI AC Asia Pacific ex Japan 45% + JP Morgan Asia Credit Index 45% + Call rate10%**

※ 상기 참조지수는 중국, 호주,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되 일본 비중을 제외하여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사가 발표하는 지수 MSCI AC Asia Pacific ex Japan 45%, 아시아 지역 회사채를 중심으로 하여 제이피모건(J.P. Morgan)이 발표하는 지수 JP Morgan Asia Credit Index 45%와 콜금리 10%를 가중평균하여 계산된 지수입니다.

※ 상기 참조지수는 단순한 참조지수로서 투자신탁자산내 유동성 및 환헤지에 의한 성과등의 요소는 참조지수내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실제 운용은 본 참조지수를 추종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집합투자기구의 성과는 참조지수의 성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조지수 산출시 종가, 환율등의 적용시점 차이에 따라 투자신탁 성과와 괴리를 보일 수 있습니다.

**(4) 집합투자기구의 위험 관리**

**① 위험관리방법**

이 집합투자기구는 운용위험 관리를 위하여 관련 시스템 (Best Investment Global System "BIGS")을 활용하고 있으며,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상품과 포트폴리오가 성과 목표와 이에 상응하는 리스크 프로파일이 서로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Schroders Investment Risk Management Framework (SIRF)를 활용하여 Risk profiling, Portfolio Management, Independent oversight의 세가지 단계를 거쳐 다각적인 위험 평가와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② 환헤지 방법**

이 투자신탁 내 외화자산에 대하여 담당 운용전문인력의 재량으로 100% 수준까지 원/달러 선물환 또는 선물 등을 통해 환헤지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상황 변동시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수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용은 목표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외환시장의 혼란 발생시 대상 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인해 헤지거래가 일시적으로 전액 또는 일부 실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헤지 대상금액과 헤지수단의 거래단위의 차이로 인해 일부 투자금액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외화자산 표시통화와 헤지통화간의 상이로 인해 투자대상국 환율변동에 따른 환헤지 효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설정 초기 등 일정기간 설정액이 환헤지 거래가 가능한 최소한의 금액 이하인 경우에 환헤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헤지의 기본목적인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③ 환헤지의 장단점**

환헤지는 외화자산투자시 환율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며, 일반적으로 통화선물 매매 및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위험회피를 추구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투자자산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투자대상국의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해당국가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은 환차익을 얻을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환헤지로 인하여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④ 펀드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환헤지는 일반적으로 투자대상국가의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을 방어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환율이 하락할 경우 환헤지에서는 환차익이 발생하여 외화자산의 하락을 상쇄할 수 있으며, 환율이 상승할 경우 환헤지에서 환손실이 발생하나 외화자산의 상승으로 상쇄될 수 있어 펀드 수익률을 환율 변동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가치의 변동, 환헤지 시행 시기의 시차, 헤지비용 등의 이유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각각의 환차손과 환차익이 완벽하게 상쇄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펀드 수익률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자산가치 변동과 환율변동으로 인해 펀드수익률에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펀드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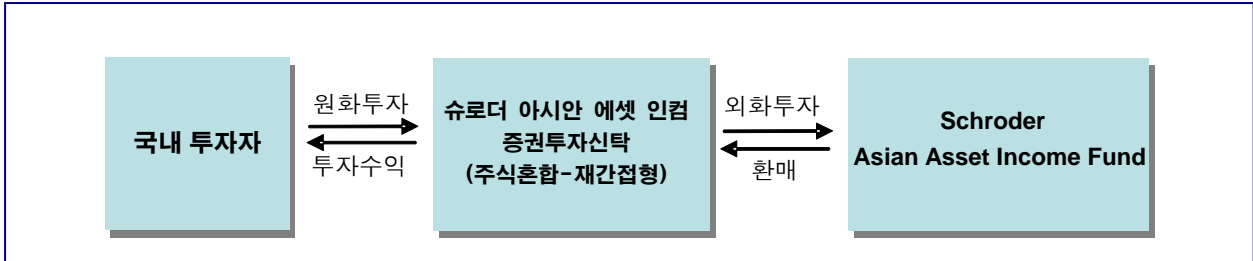
**⑤ 환헤지 비용**

목표 헤지비율	환헤지 비용
100%	-

주 1)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미설정 투자신탁이며, 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유로 상기 환헤지 비용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최초 설정일 이후 ‘Schroder Asian Asset Income Fund’에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하므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가격변동등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 상기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과 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결정된 변경사항을 관련 법령과 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서에 명시된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공지할 예정입니다.

※ 이 투자신탁의 상기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상기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 투자시 인지해야 할 이 집합투자기구 및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향후 운용과정등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위험을 포함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상세 투자위험은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 (<http://www.schroders.hk/retail/en/fundfactsheetsreports.aspx>)에 게시된 피투자집합투자기구관련 문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래 투자자들은 반드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투자를 결정하기에 앞서 본인의 자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 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자산배분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아시아 주식, 아시아 채권, 현금성 자산 및 기타 자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여 자산배분전략에 따라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에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써, 자산배분에 대한 예측이 맞지 않을 경우 손실이 예측한 규모 이상으로 커지거나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p>시장위험 및 개별위험</p>	<p>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아시아 주식 및 아시아 채권등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며, 상당한 위험성(채권의 변동성으로 인한 위험 포함)을 가지는 투자 전략과 기법을 활용하여 증권에 투자하며 적극적으로 증권을 거래함에 따라 해외 주식 및 해외 채권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증권의 가격 변동, 금리, 환율등 본질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국내외 경제변수등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의 경우 선진국 시장보다 변동이 더 심하므로, 선진국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지연되거나 정지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대상국가의 특별한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의 가치는 국내 거시경제지표의 변화보다 국제 경제전망, 금리변동, 환율변동등 해외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신용상태의 변화, 채무불이행등 개별기업의 다양한 고유위험으로 인해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p>
<p>하이일드 채권등의 투자위험</p>	<p>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아시아 하이일드 채권등을 편입하고 있으며, 하이일드 채권등 투자등급 이하의 증권의 경우 높은 신용위험과 변동성을 보일 수 있으며 여기에는 신용등급이 없거나 부실증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발행자들의 재무상황 악화, 신용상태 악화, 부도발생등으로 인하여 원리금 지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지급되지 않을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하여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일드 채권등은 발행물량이 적고 시장이 협소하여 시장에서 매각시 수요가 전혀 없거나 부족하여 매각할 수 없거나 매각이 가능하더라도 적정가격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경기침체기나 고금리 시기에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부실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p>
<p>재간접 투자위험</p>	<p>이 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증권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 가격하락등에 따라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기간내에 불가피하게 중도환매를 하는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으며,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인 외국 증권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투자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p>
<p>금리변동위험</p>	<p>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환율변동 위험</p>	<p>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통화로 표시되는 해외유가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을 투자함에 따라 관련 통화의 환율 변동에 따른</p>

	<p>신탁재산의 가치 변동에 노출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달러화로 환전된 자금 및 달러화로 표시되는 투자금액이 원-달러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헤지하기 위해 장내외 파생상품에 대한 헤지목적의 거래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현실적으로 완전 헤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대상 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 변동, 거래상대방 부재등의 경우 및 외환관련 파생시장 혼란 발생시 등에는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통화관련 환위험 회피 도구가 유효하지 못하여 적절한 환위험 회피가 곤란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상기 요인등으로 인한 환차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p>
<p>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위험</p>	<p>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거래 또는 통화 스왑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 위험을 부담하며 거래상대방의 거래불이행 발생시 미정산 수익을 상실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환율변동 제거 효과가 사라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시 계약 조건에 의하여 현재환율이 계약 환율 보다 급격히 상승할 경우 계약이 부득이 조기에 종료되어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가능하며, 이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파생상품 투자위험</p>	<p>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위험회피 및 투자 목적으로 옵션, 선물 및 선도계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션거래는 높은 수준의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옵션을 매도하는 것은 옵션을 매입하는 것보다 상당히 더 큰 위험을 수반합니다. 펀드가 수령하는 프리미엄은 고정되어 있지만, 펀드는 그 금액을 초과한 손실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매수인이 옵션을 행사하는 위험에 노출되는데, 이 경우 펀드는 현금으로 옵션을 결제하거나 기초자산을 취득하거나 교부하여야 합니다. 펀드 내 환헤지를 위하여 일부 선물환 등의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합니다. 특히,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더 높은 거래상대방 위험이 수반됩니다. 거래상대방의 거래불이행 발생시, 펀드는 예상된 지급금 또는 자산을 수령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실현 수익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p>
<p>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 위험</p>	<p>표준화된 장내거래에 비해 장외거래는 개별적인 계약이므로 장내거래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거래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호 장치가 없으며, 규제나 감독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을 발행한 회사와의 직접적인 거래이므로 그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등의 악화에 따라 장외거래의 거래상대방이 거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외파생상품의 원리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거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외시장은 장내시장보다 유동성이 취약하므로 계약 청산이 어려울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의 거래불이행 발생시 투자신탁은 예상된 자산을 수령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환매연기등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경우, 환헤지를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불이행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p>
<p>파생결합증권 투자위험</p>	<p>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입니다. 만약,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투자 원금의 손실을 입을 수 있어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위험이 수반됩니다. 투자 수익은 보장되지 않으며, 발행인이 채무를 불이행 할 수 있습니다.</p>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아시아 주식 및 아시아 채권등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함에 따라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법령 및 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시장의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지연되거나 정지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정치적·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거래 유동성, 결제, 증권의 양도 및 통화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재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채권의 가격은 채권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이자수령액이 현재 채권시장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재투자 되어진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채권시장 이자율이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자수령시의 시장이자율이 당초의 시장 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계좌 신고제도 (FATCA)하의 미국 세금 원천징수	이 투자신탁은 미국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정보보고요구 및 원천징수요구(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따라 이 투자신탁이 미국에서 얻은 소득 및 이 투자신탁에게 이자·배당금을 가져다 주는 자산의 매각 수익 각각의 30%가 원천징수될 것입니다. 다만, 미국세청 또는 재무부는 아직 협정 양식(Form)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세청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은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위 규정의 운영은 현저히 확대될 수도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잠재적 투자자들은 위와 같은 규정 및 제공·공개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규정 및 정보 보고·공개에 대하여는 아직 명확히 정하여진 바가 없으며, 추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성과와 운용방법 등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성과와 운용방법 등에도 유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지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과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 폐장 및 개장 시간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퍼레이션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유동성 위험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현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매 위험	수익자가 환매요청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며 동 환매수수료에 의하여 수익자의 환매금액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가. 일반위험**

- 본 수익권의 가격은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산의 시가를 기반으로 하며, 본 수익권의 수익뿐만 아니라 본 수익권의 가격은 상승 또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과거 성과는 미래의 성과를 나타내지 않으며,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대해 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성과는 투자자산과 현금에 수반된 위험(특히, 시장위험, 금리위험, 통화위험, 환율위험, 경제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외화증권 위험 및 정치위험을 포함)에 영향을 받습니다.
- 투자목적은 목표 성과를 나타내나 그러한 결과를 달성할 것이라는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투자목적은 시장 상황과 거시경제 환경에 따라 달성되기 어렵거나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어떠한 명시적이고 암묵적인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것은 은행 예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어떠한 정부, 정부기관 또는 은행 예금자보호를 보장하는 기관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각각의 증권과 시장은 그 성격에 따라 독특하거나 일반적일 수 있는 특정 위험들을 수반합니다. 서로 다른 증권과 시장에 수반되는 위험들이 상호 관련이 없거나 비의존적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분산요건이 위험을 제거한다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나. 특수위험**

**시장위험**

- 투자자들은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 가격과 그 증권으로부터 얻은 수익률이 변동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상당한 위험성(채권의 변동성으로 인한 위험 포함)을 가지는 투자 전략과 기법을 활용하여 증권에 투자하며 적극적으로 증권을 거래합니다. 투자자산의 가격은 변동적이며 본질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요인들(예컨대,

여러 정부기관에 의한 조치 및 국내외 경제 개발과 정치 개선에 따른 조치 등)은 시장에 급격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은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성과에, 더 나아가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활동과 투자자산의 가치에 상당히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금리 변동 수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 위험**

-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지분증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식 투자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주식의 시가는 상승 및 하락할 수 있습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며, 이에에는 투자심리,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 지역 또는 세계 경제 불안정, 환율 및 금리 변동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소는 일반적으로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증권의 거래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소의 거래 중지는 포지션을 청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이에 따라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통화 및 환율 위험**

-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투자자산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통화와 다른 다양한 범주의 통화로 표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환율변동 위험과 통화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통화가 투자자의 본국 통화와 다른 경우나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시장의 통화와 다른 경우, 투자자에게 통상적인 투자 위험보다 더 큰 추가적인 손실(또는 추가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헷징**

- 집합투자업자는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통화와는 다른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기초자산의 통화를 헷징하고자 헷징 기법을 활용할 수 있으나 그러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적인 헷지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든지 헷징 기법으로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이용하는 통화 헷징 전략이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통화 익스포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등급, 투자부적격등급(below investment grade) 및 신용등급이 없는 채무증권 관련 위험들**

- “투자등급” 채무증권은 더 낮은 등급의 채권 및 어음과 비교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우월한 이자지급 능력 및 원금상환 능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등급 채무증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손실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들로는 (i) 금리 변동, (ii)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증권 발행인의 신용도, (iii) 예상치 못한 조기상환, 및 (iv) 관련 채권시장의 하락세를 포함합니다. 더 나아가, 불리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투자등급증권의 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고 있는 증권이나 이러한 증권과 관련한 발행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투자부적격등급 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권은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과 관련하여 투자등급 증권보다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간주됩니다. 낮은 등급의 채무증권은 더 높은 등급의 증권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은 경상수익률(current yield)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낮은 등급의 채무증권은 더 높은 위험을 수반하며, 발행인의 재무상태 및 금리변동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발행인이 속한 산업에서의 불리한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낮은 등급의 채무증권 시장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등급의 증권 시장보다 활발하지 않으며, 경제 상황이나 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른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유자산 처분 능력은 부정적인 여론과 투자자들의 인식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추가적인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투자등급이 매겨지지 않는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권에 투자하는 것은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은 투자부적격등급 증권에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금리위험**

- 시장 금리 변동은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증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장기 증권은 일반적으로 금리 변동에 더 민감하며, 이에 따라 더 큰 시가 변동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장기 채권(fixed income securities)을 보유한 경우, 더 짧은 듀레이션을 가진 채권(fixed income securities)을 보유할 때보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는 더 큰 변동을 겪을 것입니다.

**신용위험**

-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투자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나 기타 채무증권은 발행인의 신용등급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발행인에 대한 신용위험을 수반합니다. 후순위 증권 및/또는 더 낮은 등급의 증권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신용위험을 가지며 더 높은 등급의 증권보다 더 큰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채권이나 기타 채무증권의 발행인이 재정상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이는 관련 증권에 대한 지급금액(0일 가능성 포함)과 이러한 증권에 대한 지급금액(0일 가능성 포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다수의 이머징마켓 국가들은 상당히 누적된 채무변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국가들의 채무변제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며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발행 증권에 투자하는 것은 정부 발행 증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큰 신용위험을 가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신용평가기관에서 정한 채권(fixed income securities)의 등급은 일반적으로 신용위험의 지표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등급이 갖는 의미는 투자자의 관점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발행인의 등급은 상당 부분 과거 실적에 기반하며 미래 상황의 가능성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등급이 부여된 시점과 등급이 갱신되는 시점 사이의 간격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등급 카테고리별로 증권에 대한 신용위험 등급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펀드 관련 위험**

-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투자하지 않을 것이나 REIT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시장 위험에 더하여) 부동산 직접 소유에 수반되는 것과 유사한 위험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REIT의 가격은 REIT가 소유한 기초 자산의 가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모기지 REIT의 가격은 담보자산의 가치뿐만 아니라 모기지 REIT가 제공한 대출금의 신용도 및 보유한 모기지의 신용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 REIT는 운용능력에 의존적이고 대체로 다각화될 수 없으며, 상당한 현금흐름 의존성, 차주의 채무불이행 및 청산(self-liquidation)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REIT가 보유한 모기지의 차주 또는 REIT가 소유한 자산의 임차인이 REIT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위험이 있습니다. 차주나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시, REIT는 저당권자 혹은 임대자로서의 권한 행사에 지체를 겪을 수 있으며, 투자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전술한 위험에 더하여,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할 수 있는 “특수목적” REIT는 호텔 REIT, 요양시설 REIT 또는 창고 REIT와 같은 특수한 부동산 부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부문에서의 불리한 상황들과 관련한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ETF 투자 관련 일반 위험**

- ETF 수익권/주식의 거래가격은 설정 및 환매의 어려움(예컨대, 외국 정부에 의한 자본통제에 따른 어려움)과 ETF 수익권/주식의 유통시장에서의 수요공급에 의해 해당 ETF 수익권/주식의 순자산가치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ETF의 수수료 및 비용, 관련 트래킹 인덱스 내에서 ETF 자산과 기초 증권간의 불완전한 상관관계, 주식가격의 반올림(rounding of share

prices), 트래킹 인덱스의 조정 및 규제 방침과 같은 요인들은 관련 ETF가 트래킹 인덱스와 근접한 상관관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ETF 운용사의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ETF의 수익률은 트래킹 인덱스의 수익률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 ETF 수익권/주식이 거래되는 증권거래소에서 ETF 수익권/주식을 위한 활발한 거래시장이 형성된다거나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할 수 있는 ETF 수익권/주식은 기준가격보다 크게 할인되거나 할증된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실물상품 투자 관련 위험**

-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실물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실물시장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물시장은 일반적으로 다른 시장보다 더 큰 위험을 수반합니다. 실물상품의 일반적인 특징은 급격한 변동성을 가진다는 것과 관련 위험들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실물상품 가격은 실물시장의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수요공급은 소비 패턴, 거시경제적 요인, 기후 환경, 자연재해, 정부의 무역, 재무, 통화 및 외환 정책과 통제, 그리고 기타 예상치 못한 사유들(이들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 이에 더하여, 실물상품의 지리적 분포와 집중도로 인하여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고조된 정치적 위험 및 국가 개입과 산출물에 대한 주권분쟁(sovereign claims to outputs)이나 전쟁 행위, 해당 자원에 대한 소작료 및 세금 인상과 같은 문제들에 노출되게 됩니다. 또한, 산업 생산량이 크게 변동하거나 급격하게 하락할 위험이나 지속적인 소비 하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이 있으며, 이는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성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거래상대방, 보관회사 및 결제 위험**

-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증권을 거래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과 결제 불이행의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이머징마켓 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는데, 이머징마켓의 결제 체계/장치는 일반적으로 다른 선진국들보다 덜 선진화되고 신뢰성이 낮습니다. 이는 결제 불이행의 위험을 증가시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이머징마켓 투자자산에 상당한 손실을 입히게 될 수 있습니다.
-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보관 및/또는 결제시스템이 완전히 선진화되지 않은 시장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거래되어 하위보관회사들에 위탁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은 보관회사가 당해 하위보관회사에게 위탁된 재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현금계정은 대개 보관회사의 기록으로 보관될 것이지만 잔액은 하위보관회사가 보유하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옵션, 선물, 계약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기타 금융파생상품들을 거래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거래하는 이러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도산, 파산 또는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가지게 되며, 그러할 경우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증권이나 투자자산이 상장되거나 등급이 매겨지거나 활발하게 거래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유동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투자자산에서 보유자산의 축적 및 처분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며 불리한 가격으로 이를 이행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제한적인 유동성을 불러오는 불리한 시장 상황 때문에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자산을 처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관련 투자상품의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 스프레드가 높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한 거래비용을 발생할 수 있으며,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이러한 투자상품을 매각할 때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 유동성 위험은 특정 파생상품이 매입 또는 매각되기 어려울 때에도 발생합니다. 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특히 크든지 관련 시장이 비유동적(사적으로 협상되는 다수의 파생상품과 같은 경우)인 경우, 해당 파생상품을 유리한 시점이나 가격으로 매매를 이행한다든지 포지션을 청산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관련 위험**

- 파생상품은 하나 이상의 기초 증권, 금융 벤치마크 혹은 인덱스와 연결되는 가치를 지닌 투자상품과 계약을 포함합니다. 투자자는 특정 증권, 금융 벤치마크 혹은 인덱스의 가격 변동에 따라 파생상품으로 위험을 회피하거나 투자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위험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수의 파생상품은 계약이 체결될 때 지급 현금이나 예탁 현금보다 상당히 더 큰 시장 익스포저를 가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불리한 시장 움직임에도 전체 투자자산의 손실뿐만 아니라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손실 가능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위험**

- 본 수익권의 상당 부분을 환매(불리한 경제 혹은 시장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큼)하게 되면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현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리고 더 적은 자산기준량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포지션을 취하기 위하여,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산을 바람직한 기간보다 더 빨리 청산할 수 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환매되는 수익권 및 잔여 수익권 모두의 순자산가치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상황의 경우 본 수익권의 거래를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순자산가치 평가는 중지되며 이에 영향을 받는 환매신청과 환매대금의 지급도 연기됩니다. 본 수익권이 환매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본 수익권의 순자산가치가 하락하는 위험은 환매를 신청한 수익자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의 의견으로 어느 수익자가 보유한 본 수익권이 어느 국가, 정부 당국 또는 증권거래소의 법률이나 요건을 위반하게 되거나 신탁계약서에 명시된 기타 유사 상황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적으로 환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 환매는 환매 시점에 따라 수익자에게 불리한 과세 및/또는 경제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자도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해지, 강제 환매 또는 기타 상황으로 인해 투자자가 손실을 입은 부분을 변상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

-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조기 해지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자산에서 수익자들이 보유한 지분에 비례하는 몫을 해당 수익자에게 분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도 또는 분배시점 당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특정 투자자산이 동 투자자산의 취득원가보다 더 작은 가치를 가질 수도 있으며, 이는 수익자들에게 상당한 손실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완전히 상각되지 않은 본 수익권과 관련한 설립비용은 당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자본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머징마켓 및 개발도상국 시장 증권 위험**

- 이머징국가나 개발도상국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정부, 덜 다각화된 산업기반을 토대로 하는 경제, 적은 수의 증권들이 거래되는 증권 시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머징마켓의 회사들은 선진 시장의 다수의 회사들보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더 작으며 경험이 부족하고 최근에 설립된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머징국가나 개발도상국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의 가격은 변동성이 큽니다. 이에 더하여, 외국 투자자들은 이머징국가나 개발도상국에서 자주 투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으로 무엇보다도 투자 이행이나 수익 또는 자본 송금에 앞선 정부 차원의 승인을 요구하게 될 수 있으며, 외국인들이 보유하는 증권의 금액이나 유형 또는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회사들에 대해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 개별적인 이머징국가의 경제는 국내총생산, 인플레이션율, 통화절하, 자본 재투자, 자원 자족률 및

국제수지 균형 등의 측면에서 선진국의 경제와는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다를 수 있으며, 현저하게 덜 다각화된 산업기반을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개발도상국의 경제는 일반적으로 국제무역에 상당히 의존적이며, 이에 따라 무역장벽, 외국환 관리, 상대적 통화가치의 관리 조정 및 무역 대상국들과 협의되거나 이들로부터 부과된 기타 보호무역정책들에 의해 불리한 영향을 받아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사정은 무역 대상국들의 경제 상황에 의해서도 불리하게 영향을 받아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 이머징마켓 증권의 위험들로는 더 큰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더욱 현저한 정부의 경제 개입, 상대적으로 약한 정부의 감독 및 규정, 통화 헷징 기법의 이용 불가능성, 새로 설립된 소규모 회사들, 감사 및 재무 보고 기준의 차이(이는 발행인들에 관한 중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그리고 덜 선진화된 법률 체계를 포함합니다. 이에 더하여, 비거주자들이 수령한 이자 및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머징시장 및 개발도상국 시장마다 다르며, 어떤 경우에는 비교적 높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세 법률이나 절차가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못하게 정의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과세의 소급 적용을 허용하여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활동을 이행하거나 자산을 평가할 때만해도 예상치 못했던 현지 조세 의무를 향후 부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배당 관련 위험(Distribution Class만 해당)**

-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얻은 이자소득(income) 및/또는 자본소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충분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의 재량으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자본금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배당금이 자본금에서 지급되는 경우, 이는 자신이 최초에 투자한 원금 또는 그에 귀속되는 자본소득의 일부를 상환받거나 인출하는 것과 같으며 수익권 가치의 즉각적인 하락을 가져오게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간 자산 및 채무 분리**

- 본 펀드의 모든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신탁계약서과 그의 보충본에 따라 독립적인 개별 신탁으로 설립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은 피투자집합투자기간에 서로 효율적으로 분리되며, 어떠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도 다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채무나 그에 대한 청구를 부담하는 데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이 사실상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관할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각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각자의 자산이 다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채무나 청구를 부담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게 됩니다. 가능한 한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잠재적인 채권자들에게 특정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에 대해서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본 펀드의 기타 모든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전체적으로 또는 수탁회사의 고유자산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는 조언을 주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문서에 이러한 취지의 설명을 포함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클래스간 채무(Cross-Class Liability)**

- 특정 클래스의 부채가 동 클래스의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클래스에 대한 채권자는 다른 클래스에 귀속된 자산들에 대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회계 목적상 각 클래스에 대해 독립적인 계정이 개설됨에도 불구하고,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파산이나 해지시(즉,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으로 그의 채무를 감당하기 불충분한 경우),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채무를 감당하기 위해 개별 클래스의 자산뿐만 아니라 전체 자산이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은 또 다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주1) 환매금지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에도 투자대상 자산이 장외파생상품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일 경우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중도매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2)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3)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이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주된 투자대상인 아시아 주식과 아시아 채권에 30%~70% 범위로 투자하는 비율조정형 자산배분 집합투자기구인 점을 고려하여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는 상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국가 및 관련 산업 경제등 여건 변화와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주식, 채권등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특히 하이일드채권등의 변동성등에 따른 위험과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이해하며, 가장 높은 수준의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수수료 및 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수익자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종류의 수익증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60%이상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li> <li>-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이상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li> <li>- 주식형수익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li> </ul>
2등급	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60%이하~30%이상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li> <li>-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미만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li> <li>- 후순위채권, 투기등급(투자부적격)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li> <li>- 부동산실물(상가 등)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신탁</li> <li>-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투자신탁</li> </ul>
3등급	중간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30%미만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li> <li>-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30%미만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li> <li>-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0%미만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li> </ul>
4등급	낮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채 및 회사채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li> <li>- 장내차익거래용 파생상품투자신탁</li> <li>-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5%미만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li> <li>- 채권형수익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li> </ul>
5등급	매우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MF</li> <li>-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li> <li>-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0%이하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li> </ul>

주1) 위 위험등급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및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여 분류합니다.

주2)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하는 투자설명서상의 투자위험등급 분류는 판매회사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와 상이할 수 있으니, 상품 가입시 판매회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3)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과 위험등급은 오로지 참고 목적으로 기재된 것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 증권에 투자하는 해외투자펀드에 수반될 수 있는 환율 변동 위험은 위험등급 산정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투자판단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가.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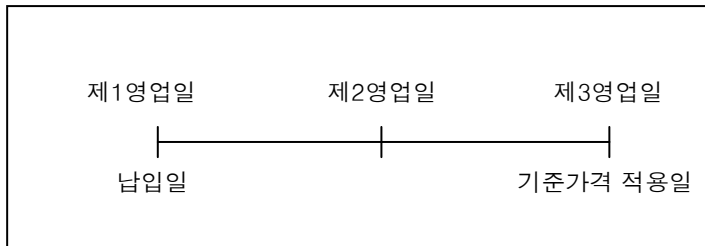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단, 판매사별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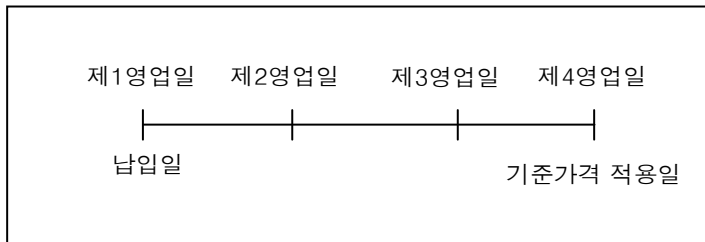
① 17시(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② 17시(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3)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주1)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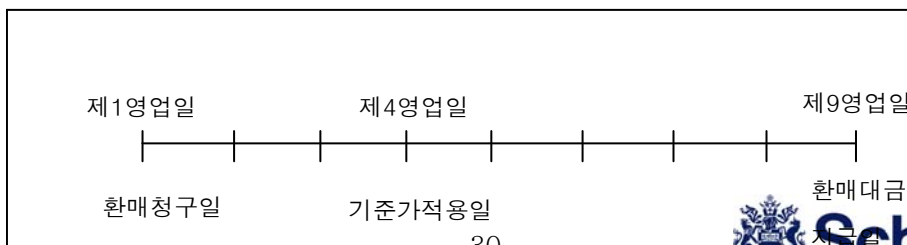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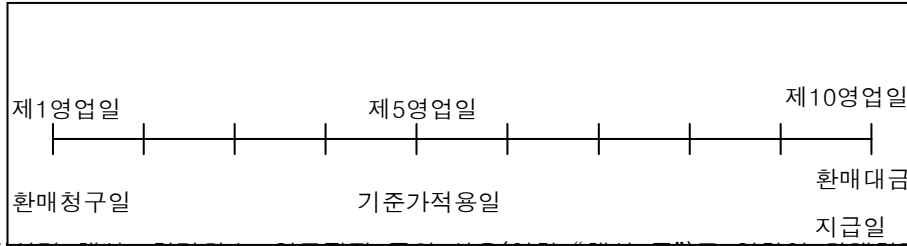
다만, 판매사별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도 가능합니다. (단, 판매사별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7시(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신청한 경우: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지급



- ②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를 신청한 경우: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D+9)에 지급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외국의 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계좌로 환매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환매수수료는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을 위한 비용의 증가를 이유로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투자자의 환매금액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집합투자기구 종류	환매수수료	비고(지급시기)
A, A-e, C, C-e, I, F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시

주1) 단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주1)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합니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 발생 또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환매연기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전에 환매연기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환매할 수 있습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 ④ 환매연기사유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⑥ 집합투자업자는 ⑤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서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기준일의 7영업일 전일(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8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기준가격을 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환매 연기 이후, 환매연기기간동안 수령한 수익증권의 매수 및 환매신청은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된 이후의 제 1 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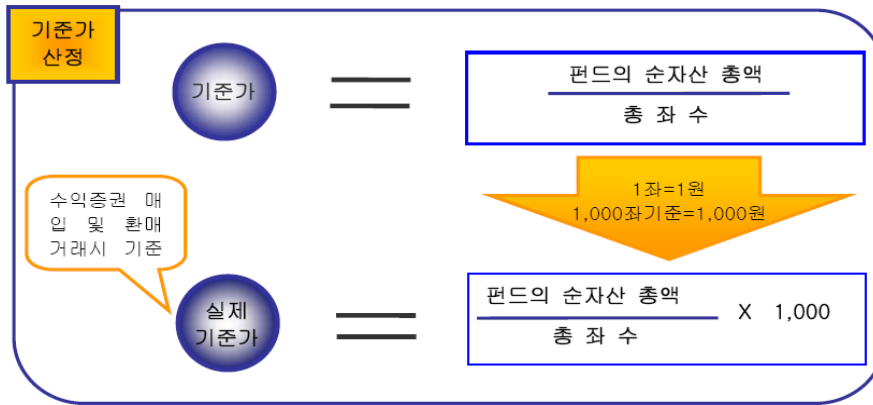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 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투자신탁 간 판매보수 및 수수료·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및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schroders.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홈페이지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외화표시수익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외국 증권시장에서 상장되어 신뢰할만한 시가가 있는 외화표시 수익증권은 그 외화표시 수익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의 최근일 최종시가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채무증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상장주식	외화표시상장주식 계산시에 알 수 있는 해외 증권시장의 최근일 최종시가
외화표시비상장주식	외화표시비상장주식 계산시에 알 수 있는 해외장외시장의 최근일 최종 거래 시가로 평가, 다만, 최근일 최종 거래 시가가 형성되지 않거나 최종거래시가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상장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다만,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
장내파생상품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외국의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준일에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최종시가)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 평가기준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거래일의 매매기준을 또는 최종시가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성됩니다. 동 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되어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집합투자기구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A	제한없음	주1)납입금액1.0%이내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주4)A-e	판매회사 온라인을 통해 가입한 고객에 한함	주4)납입금액0.7%이내	
C	제한없음	없음	
C-e	판매회사 온라인을 통해 가입한 고객에 한함		
F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 투자자(단, 법 제9조제5항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제 3항제15호 내지 제18호는 제외), 100억원 이상의 개 인 고객, 500억원 이상의 법인 고객, WRAP ACCOUNT, 특정금전신탁, 변액보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기관투자자		
I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의 개인 고객, 5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의 법인고객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주1) 종류A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납입금액의 1.0%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 환매수수료 부과를 위해 이익금 산정시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주3) 판매회사는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 통장거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주4) 온라인 전용 종류 A-e의 선취판매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정률식 인하 적용:**

a. 0.60% (2013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b. 0.50% (2014년 1월 1일~)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집합투자기구 종류별 부과비율 (연간,%)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비용	총보수 · 비용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증권 거래비용
A	0.1	0.7	0.04	0.02	-	0.86	0.86	-
주6)A-e	0.1	주6)0.49	0.04	0.02	-	0.65	0.65	-
C	0.1	1	0.04	0.02	-	1.16	1.16	-

주 6) C-e	0.1	주 6) 0.7	0.04	0.02	-	0.86	0.86	-
F	0.1	0.05	0.04	0.02	-	0.21	0.21	-
I	0.1	0.3	0.04	0.02	-	0.46	0.46	-
부과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후급				사유발생시	-	-	사유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으로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종류형 포함)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기타비용 비율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수치화된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부과하는 운용보수는 연 0.625%입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비용은 직전 회계연도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합니다. 기타 비용 및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비용의 추정치를 기초로 산출하므로, 실제 합성총보수·비용 비율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미설정된 투자신탁이므로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 비율을 합산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주 6) 온라인 전용 종류 A-e, C-e의 판매회사보수는 아래와 같이 정률식 인하 적용:

- a. 종류 A-e: 연 0.42% / 종류 C-e: 연 0.60% (2013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 b. 종류 A-e: 연 0.35% / 종류 C-e: 연 0.50% (2014년 1월 1일~)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원)

구분	집합투자기구 종류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A	187,269	370,937	570,045	1,144,157
	A-e	136,159	276,249	428,744	871,707
	C	118,900	370,467	641,573	1,415,077
	C-e	88,150	275,491	478,581	1,064,172
	F	21,525	67,714	118,429	268,035
	I	47,150	147,952	258,091	580,158

주 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부과하는 운용보수는 연 0.625%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미설정된 투자신탁이므로 상기 수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기타비용을 합산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타 비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3) 종류 A와 종류C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3년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또는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4) 온라인 전용 종류A-e, C-e의 선취판매수수료 또는/및 판매보수는 상기와 같이 정율식으로 인하되며, 본 보수 및 비용 예시는 최초 설정시의 선취판매수수료 또는/및 판매보수를 반영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배분

-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제반 세액 및 비용등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단,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 (2)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 나. 과세

※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며, 향후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과세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 및 과세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 으로 함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신탁 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 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상장주식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국내상장주식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나)국내상장주식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행한 외환 선도거래(FX Forward)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보다 큰 경우(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행한 외환 선도거래(FX Forward)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 부분이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되기 때문임)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 배당소득)이 4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 배당소득)이 4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차대조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손익계산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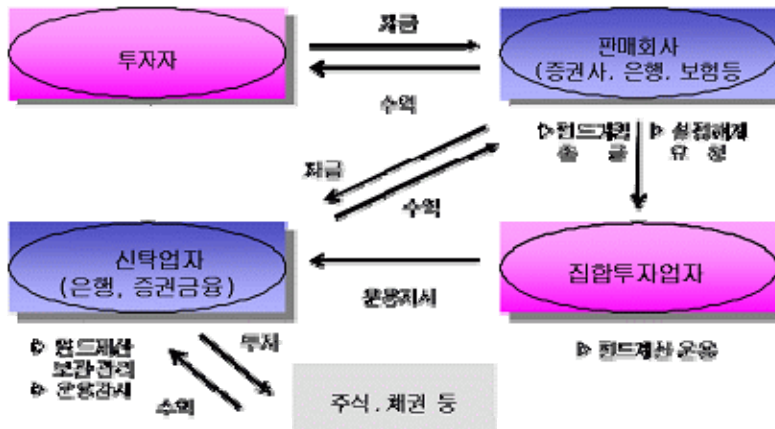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개요

회사명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84번지 서울파이낸스센터 26층 (02-3783-0500, www.schroders.co.kr)
회사 연혁	1994.05 슈로더투자신탁 서울사무소 개설 2001.05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설립등기 (납입자본금 100 억원) 2001.07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증권투자신탁운용업 허가 취득 2001.09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증권투자신탁운용업 개시
자본금	100 억원
주요주주현황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100%)

#### 나. 주요업무

##### (1)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 (2)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계약서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억원)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 목	'12.3.31	'11.3.31	항 목	'12.3.31	'11.3.31
유동자산	428	508	영업수익	446	660
고정자산	25	20	영업비용	303	449
<b>자산총계</b>	<b>454</b>	<b>528</b>	영업이익	144	211
유동부채	36	68	영업외수익	0	7
고정부채	1	0	영업외비용	1	1
<b>부채총계</b>	<b>37</b>	<b>68</b>	경상이익	143	218
자본금	100	100	특별이익		
이익잉여금	316	360	특별손실		
자본조정			법인세	37	53
<b>자본총계</b>	<b>416</b>	<b>460</b>	<b>당기순이익</b>	<b>106</b>	<b>165</b>

라. 운용자산 규모 (2012.6.30 현재 / 억 좌)

구분	증 권					부동산	특별 자산	혼합 자산	MMF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재간접형	파생형					
수탁고	43,361	6	1,560	1,087	0	0	0	0	0	46,014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 개요

회 사 명	한국씨티은행(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중구 다동 39 (02-3455-2515)
회 사 연 혁 등 (홈 페이지 참조)	www.citibank.co.kr

(2) 주요업무

- ①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②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③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④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⑤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⑥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⑦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⑧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⑨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① 의무**

- A.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B.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계약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C. 신탁업자는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계약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등을 확인합니다.

**②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아이타스(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02-2180-0400)
회 사 연 혁 등 ( 홈페이지 참조 )	www.shinhanaitas.com

**(2)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6 (02-3215-1400)
회 사 연 혁 등 ( 홈페이지 참조 )	www.koreaap.com	www.bond.co.kr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합니다.

##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투자자 총회 등

#####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②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③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재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법 제188조제2항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익증권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 (3)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1)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신탁계약서·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수익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수익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인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소규모투자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89조제1항제5호 및 제192조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련 법령 및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에 명시된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보하며, 임의 해지가 결정된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합니다. 판매회사는 상환금등을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위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②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 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
  - 그 밖에 법시행령제 92 조제 3 항에 정하는 사항
- ③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서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위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법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 그 밖에 법시행령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아래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서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시행령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②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schroders.co.kr),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②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변경
- ③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⑤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⑥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서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⑦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⑧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⑨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⑩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⑪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등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투자증권 거래>	①선정시 고려사항 -거래 비용의 유리성 -매매체결의 신속성, 정확성과 효율성 -리서치, 시장정보 제공능력 및 기타 서비스 제공 능력 -중개회사의 재무상황과 경영 현황 등 발생 가능한 크레딧리스크 관리  ②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특정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 투자신탁과 관련되어 사용될 것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가. 회사 경영관련 비용 나.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다. 마케팅비용 라.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마. 직접적인 현금 등 지급 바. 운용전문인력은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③선정방법 운용역,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등 중개사와 업무적으로 연관된 담당자들이 매 분기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하여 선정. 선정 결과는 분기 중 거래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되며, 분기말 리뷰를 거침
<장내파생상품 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주1) 매매대가 이익: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자	2 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 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 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수익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 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 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 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 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업자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함

	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설정	신탁계약서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 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 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해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한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고객 보관용)

- ◆ 집합투자기구(펀드)명칭: 슈로더 아시아 에셋 인컴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 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판매직원 성명:            서명)------(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회사 보관용)

- ◆ 집합투자기구(펀드)명칭: 슈로더 아시아 에셋 인컴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고객 확인 사항	고객기재사항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받았음)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적합함)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제공받고 들었음)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들었고 권유받았음)

년 월 일

고객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